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2. 10. 30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개정이유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(법률 제4473호 : '91.12.31)의 개정
에 따라 “의사담당관”을 “의사국장”으로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용어의 정의중 본청의 “의사담당관”을 “의사국장”으로 변경

3. 개정근거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(의사국의 설치등)

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
제3조(조직)

4. 조례안(별첨)

5. 기타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- 예산상황 : 해당사항 없음
-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중 “의사담당관”을 “의사국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중 “의사담당관”을 “의사국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생략)</p> <p>제2조 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본청 :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<u>의사담당관</u>을 말한다.</p> <p>제3조 - 제56조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(신 설)</u></p>	<p>제1조 : 현행과 같음</p> <p>제2조 (정의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본청 :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의사국</u></p> <p><u>장</u> -----</p> <p>제3조 - 제56조 : 현행과 같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1조 (시행일)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u>제2조 (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는 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u></p> <p><u>제2조 제1호중 “의사담당관”을 “의사국장”으로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(부분)발췌서

○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법률 제4473호 : '91.12.31.)

제22조 (의사국의 설치등) ① 교육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,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직원을 둔다.

○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 (제1996호 : '92.7.31.)

제3조 (조직)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,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고,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과 의안연구관 1인을 두되,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